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영실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160

발 의 년 월 일 : 2024년 10월 15일
발 의 자 : 이영실, 곽향기, 김경훈, 김성준, 김영철, 김재진, 남궁역, 박수빈, 박승진, 박중화, 박춘선, 서준오, 이용균, 이원형, 임규호, 임종국, 최기찬, 최재란 의원(18명)

1. 제안이유

○ 서울에너지공사가 인사, 재무 등 공사 경영의 근본이 되는 정관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, 시장의 인가를 받게 되어 있는 현행 규정에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, 공사 운영의 투명성 및 내실화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기 전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함(안 제6조제2항 후단 신설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기업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정관) ① (생 략)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<후단 신설>	제6조(정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---- ---------- -----.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○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에너지공사가 인사, 재무 등 공사 경영의 근본이 되는 정관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, 시장의 인가를 받게 되어 있는 현행 규정에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, 공사 운영의 투명성 및 내실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오희선
추계세제팀장	김중헌
추 계 분 석 관	김지혜

☏ 02-2180-7953
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